

의안번호	2207164
의 퇴 인	김승수의원
회 답 일	2025. 1. 9.
추계번호	24C6460

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메타버스 콘텐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9,000만원(연평균 5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 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메타버스 콘텐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(안 제7조)	100	—	—	100	—	200	40
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 민관협의체 설치·운영 (안 제9조)	4	4	4	4	4	20	4
표준계약서 마련 (안 제26조)	70	—	—	—	—	70	14
합계	174	4	4	104	4	290	5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기본계획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메타버스 콘텐츠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9조(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 민관협의체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체)	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, 전문기관 및 사업자단체,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(이하 “민관협의체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음	
3	안 제10조(실태조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메타버스콘텐츠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에 필요한 메타버스콘텐츠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현황과 통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1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4조(연구·기술개발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에 관한 연구·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7조(전문인력 양성)	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8조(창업의 활성화)	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와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. 창업자금의 융자 2.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. 연구개발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. 그 밖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	재량규정
8	안 제19조(중소기업 지원)	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기업인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20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	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21조(전담기관의 지정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고, 정부는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26조(표준계약서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,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12	안 제28조(이용자 보호 시책 등)	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을 추진하여야 함 1. 이용자에 대한 메타버스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.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.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.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.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.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	
13	안 제32조(이용자 교육 및 홍보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때 메타버스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자의 메타버스콘텐츠와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기본계획)	○	
2	안 제9조(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 민관협의체)	○	
3	안 제10조(실태조사)	×	- 추계 곤란
4	안 제11조(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×	- 추계 곤란
5	안 제14조(연구·기술개발 지원)	×	- 추계 곤란
6	안 제17조(전문인력 양성)	×	- 추계 곤란
7	안 제18조(창업의 활성화)	×	- 추계 곤란
8	안 제19조(중소기업 지원)	×	- 추계 곤란
9	안 제20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	×	- 추계 곤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0	안 제21조(전담기관의 지정)	×	- 추계 곤란
11	안 제26조(표준계약서)	○	
12	안 제28조(이용자 보호 시책 등)	×	- 추계 곤란
13	안 제32조(이용자 교육 및 홍보지원)	×	-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메타버스제작콘텐츠의 제작 활성화(안 제12조), 공동 개발·이용의 촉진(안 제15조)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(안 제16조)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 조항은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고,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예산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여기에서는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음
- 추계가 곤란한 제정안 조항 다수와 관련한 사업들은 과거에 실시한바 있으나, 2025년 예산 기준으로는 해당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,¹⁾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관련 사업 중 일부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그에 따른 예산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메타버스 콘텐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7조)

- 안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 재정 소요 발생 예상

1) 2025년 문체부 예산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육성(7132-303) 세부사업은 전액(2024년 기준 7,061백만원) 감액되었음

-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3년마다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「가상융합산업진흥법」 제6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5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2] 메타버스 콘텐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기본계획 (안 제5조)	100	-	-	100	-	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 민관협의체 설치·운영(안 제9조)

- 메타버스콘텐츠산업 민관협의체에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는 데 매년 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민관협의체는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, 전문기관, 사업자단체,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제정안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수는 16명으로 가정
 -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자문위원회인 「K-콘텐츠 수출협의회」는 30명 위원 중 정부부처를 제외한 위원 수가 17명임²⁾
 -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
 - $16명 \times 1회 \times 250,000원 = 4,000,000원$

2) 공공기관: 12명, 민간전문가: 5명, 2024년 회의는 연 1회 개최하였음

다. 표준계약서 마련(안 26조)

- 안 제26조에 따라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 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7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
 - －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2022년도에 7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표준계약서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표준계약서 마련 (안 제26조)	70	-	-	-	-	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